

2025년도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

1. 발급기간 : 2026.01.15.(목) ~

※ 발급기간 이전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장학금 수혜금액 등 최종 확정된 자료가 아니므로 발급기간 이후 최종 확정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.

2. 발급방법 :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제한)에 따라 전화/팩스/이메일 요청이 불가하오니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포털 출력(학생 본인) : 아주대학교 포털 로그인 → 학사서비스 → 장학/등록 →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→ 2025년 선택

나. 홈페이지 출력(학부모) : 대학생할 → 증명서 발급 →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→ 바로가기 → 학생 정보 및 학부모 비밀번호 입력 → 확인

- 학생이 미리 설정해둔 학부모비밀번호와 동일하게 입력해야 출력 가능

- 학부모비밀번호 설정 방법 : 아주대학교 포털 로그인 → 학사서비스 → 학적기본조회 → 신상 → 학부모비밀번호 입력 및 학부모 등록금출력물 조회 동의 체크

다.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

-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양가족인 자녀의 교육비납입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료제공자(부양가족인 자녀)의 **자료제공동의**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.

3.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

가. **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(C) = 등록금(A) - 장학금 등(B)**

※ 장학금 등(B)이 등록금(A)을 초과하여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(C)이 마이너스인 경우 최종 교육비부담액은 0원

나. 등록금(A) : 2025-1,2학기 입학금, 수업료, 계절학기등록금 등 (환불액은 제외)

다. 장학금 등(B) : 학생에게 지급된 **모든 장학금**(고지서감면 장학, 근로장학 등 계좌이체로 직접 지급된 장학 등 전부 포함)과 **학자금대출**

※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(교육비 세액공제) 제2항 및 제9항

1) 장학금

-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
-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 등
- 「사내근로복지기본법」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
-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

2) 학자금 대출금

- 한국장학재단 「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», 「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»,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의 과밀화 해소 등을 위하여 「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 대출», 한국주택금융공사 학자금대출 등
- **학자금 대출은 대출받은 자(학생)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**
- 부모가 대신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학생의 부모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가 아님

※ 2025년 1~2월 지급받은 2024학년도 장학금은 장학금 등(B)에 포함

※ 장학금을 학생에게 지급하지 않고 학자금대출금으로 상환하는 경우는 교육비납입증명서 상의 장학금 등(B)에서 제외

※ 예시 : 등록금 4백만원, 근로장학금 1백만원, 학자금대출 2백만원인 경우

납부연월	종류	총교육비(A)	장학금 등(B)	공제대상 교육비 부담액 (C=A-B)
2025.2	수업료	4,000,000	3,000,000	1,000,000

4. 입학전형료

가.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의4에 따라 입학전형료 또는 결제대행 수수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

나. 2025.1.1. ~ 12.31.에 본교 대학(원)에 납부한 입학전형료의 경우,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가능

5. 관련문의

가. 등록금(A) 관련 문의 : 재무회계팀(2079)

나. 장학금 등(B) 관련 문의

- 학부 : 학생지원팀(교내장학 2035, 교외장학 2038, 국가장학 2039, 학자금대출 2036)
- 일반/특수/전문대학원 : 각 대학원 교학팀